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택가에 위치하여 아동접근이 용이하며 매입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국유지(건물)를 어린이집 신축예정 부지로 취득코자 함.

○ 취득대상 재산현황

소재지	지 목	면 적(m ²)	m ² 당 공시지가 (천원)	예정가격 (천원)	소 유 자
합 계	2필지 (1동)	751.17	-	535,000	-
당리동 342-59	대	298.6	705	500,000	재정경제부
“ 342-2	“	324.2			
위지상 건물	철콘스	128.37	273	35,000	“

3.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검토의견

-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건은 2003년도 예산으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내용으로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택가에 위치하여 접근이 편리한 예정부지를 매입함은 현실적인 계획이라 하겠으나 구재정여건상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

2002. 10.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립